

CONTACT



변호사 김운호

T: 02,772,4695
E: unho.kim@leeko.com



변호사 이은우

T: 02,772,4334
E: eunwoo.lee@leeko.com



변호사곽재우

T: 02,772,4985
E: jaewoo.kwak@leeko.com



변호사 전하윤

T: 02,772,5964
E: haryun.chun@leeko.com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등을 도입한 「미술진흥법」의 제정 및 시행 예정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된 「미술진흥법」이 2023. 6. 30.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여 2023. 7. 25.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내년 7. 26. 「미술 시장 유통 질서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바, 중장기적으로 미술 서비스업 신고 제도 도입 및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의 관점에서 미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미술진흥법의 제정 배경

개별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된 문학, 공연, 출판, 음반, 영화 등과 달리 예술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미술은 그 동안 문화예술진흥법상 하나의 세부 분야로 다루어져 왔을 뿐, 미술 분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국내 미술 시장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미술 시장의 투명화 및 양성화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술 관련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미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미술진흥법은 미술품 시장의 규제 측면보다는 작가의 발굴과 양성, 소비자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 미술진흥법의 주요 내용

미술진흥법은 미술을 창작·유통 및 향유하는 미술 서비스업자, 소비자, 미술 활동을 하는 작가 등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미술 시장 유통질서 조성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진품증명서 제도 등 도입

미술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미술진흥을 위하여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일반적 의무(제15조 제1항) 및 미술 서비스업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일반적 의무(제16조 제1항) 등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진품증명서 제도가 눈에 띕니다. 미술진흥법은 미술품의 구매자가 작품을 판매한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해당 미술품의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진품증명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나, 기본적으로 작가, 작품명, 구매일자, 구매처 및 보증내용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제16조 제3항). 업계에서는 이렇게 발행된 진품증명서가 추후 미술품 거래의 기초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한 미술 시장 유통질서 수립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제도

미술진흥법은 미술 서비스업을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여기서 “미술 서비스업”이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및 미술 전시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의미하는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5항).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향후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제도에 관한 규정은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미술 작가의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미술진흥법은 일명 “추급권(Resale Right)”이라고도 불리는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동안 미술 업계에서는, 작가가 미술품을 최초로 판매한 이후 작가의 명성이 높아지고 미술품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후 미술품 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작가의 명성이나 미술품 가치 상승의 이익이 작가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특히 낮은 가격에 미술품을 판매하는 신진 작가들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미술품이 작가로부터 최초 판매된 이후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소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가 사망한 후에도 30년간 존속하여 작가의 법정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2항).

다만,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그 적용범위는 제한됩니다. 즉,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나, 재판매된 미술품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매도인이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재판매가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24조 제1항 제1~3호). 한편,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산정 비율은 추후 대통령령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될 예정입니다(제24조 제2항).

재판매보상청구권 관련 조항은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시사점

이번 미술진흥법의 제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미술 시장을 활성화 및 양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들이 상당수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향후 구체화될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미술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매보상청구권은 향후 미술품의 1차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와 실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행사가 기존에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소수의 작품 거래에 치중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있고,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작품의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 논의 및 시행령 제정에 따른 제도 구체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저작권, 특허, 상표,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의 성공적 수행 이외에도,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